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605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23.

발의자 : 안민석 · 노웅래 · 손혜원

고용진 · 김병욱 · 오영훈

송갑석 · 이동섭 · 박홍근

김태년 · 인재근 · 이상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舊 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2009. 7. 31.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법률제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되었으나, 이 법에서 과거 명칭(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)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. 이에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 중 “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8항에”를 “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 | 제37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제7조에서 준용하는 「 <u>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| 2. ----- 「 <u>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9조제3항에 ----- ----- ----- |
| 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